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(리급, 마을공동체·사회적경제분야)
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년 7월 26일

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예정 직 급	선발 인원	근무 기간	근무예정 장소(부서)	담당 직무내용
마을공동체 ·사회적 경제분야	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1명	임용일로부터 1년	금천구 공동체경제 통합지원센터 (자치행정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마을공동체·사회적경제 DB 구축 및 기록관 운영○ 마을공동체·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추진○ 마을공동체·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및 설립·운영 상담○ 마을공동체·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○ 지역 의제 발굴, 특화사업 개발 및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모델 육성○ 통합지원센터 운영·관리 및 기타 마을공동체·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

※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. 응시 자격

○ 공통 응시자격 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- 지역·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연령 : 18세 이상인 자(2006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□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□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○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

-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)
-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구 분	응시 자격요건(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)
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(마을공동체· 사회적경제분야)	1.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※ 직무분야 : 마을공동체, 사회적경제, 주민자치 분야

※ 실무경력 :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으로 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력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·재단법인, 협동조합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위 직무분야 활동 경력
- 민간부문(법인, 단체)의 근무 경력 또는 활동 경력

4. 근무조건

○ 계약기간 : 임용일로부터 1년

※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○ 근무시간 : 1일 7시간 (주 35시간) 월~금요일 09:00 ~ 17:00

※ 단, 주민 대관 등 센터 운영상 필요 시 당직근무 이행 필수

○ 근무장소 : 금천구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(금천구 탐골로8길 23 또는 은행나무로 45)

○ 보 수 :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

구 분	상한액	하한액
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	50,967천원	36,357천원

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
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8. 8.(목) ~ 8. 14.(수) (평일 09:00~18:00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 ※ 퀵서비스, 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가
※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(빠른 등기)까지 유효함(☎ 02-2627-2177)로 도착 여부 반드시 확인)
- 접수처 :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 2관
 - 주소 : (08656)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8길 23(3층)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 붙임의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※ 금천구 수입증지(1층 통합민원실 우편 접수 시 통상환증서 동봉)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- 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- ※ 우편접수에 한해 "응시번호"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통보하고, "응시표"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

○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면접시험		면접합격자 발표
	일시	장소	
2024. 8. 20.(화)	2024. 8. 22.(목) 14:00	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 2관 2층 세미나룸	2024. 8. 23.(금)

- 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(다만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※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·시행

나. 2차 시험(면접시험)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
- ※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인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
-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다. 면접합격자 발표

-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.
- ※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임용기관(근무 예정 부서)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시행됨.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 결격사유,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(첨부 1) 1부

- 응시수수료(5,000원)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
 - ※ 구입장소 :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/ 우편접수 시 통상환증서(우체국 판매) 동봉
 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**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**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 가족증명서, **가족관계증명서류**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력서(첨부 2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(첨부 3)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(첨부 4) 1부
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 5) 1부

○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첨부 6) 1부

○ 주민등록초본(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
○ **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**
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(응시 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)를 정확히 기재(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확인자 서명, 연락처 포함)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- 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[첨부 7]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 추가 제출

○ **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첨부 7) 1부(해당자)**

○ **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(해당자)**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※ 사본 제출 가능(단, 최종 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○ **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)**

○ **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1부(해당자)**

- 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※ 최종합격자의 경우 해외 학위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
- ▶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▶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), ②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 서류* ①, ②모두 제출하고 경력 입증에 어려울 경우 다른 서류 (근로계약서, 업무분장 내역, 인사 기록카드 등)도 함께 제출
- *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개 선택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)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. 단,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임기제공무원은 「공무원연금법」을 적용받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▶ 금천구청 자치행정과 (☎ 02-2627 - 2177)

- 붙임**
1. 직무기술서 1부
 2. 제출서류 양식 1부